

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의안번호 : 제2653호
- 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 출 일 : 2025년 3월 31일
- 라. 회 부 일 : 2025년 4월 02일

2. 제안이유

-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의 관리 운용부서 정비를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관리·운용의 기금관리공무원 중 분임기금운용관을 ‘도시계획과장’에서 ‘도시공간전략과장’으로 변경함 (안 제7조)
- 나.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‘도시계획과장’에서 ‘도시공간전략과장’으로 변경함(안 제9조)
- 다. 그 밖의 제목 및 문구 정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 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 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- 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 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(2025. 2. 13. ~ 3. 5.) 결과: 의견 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이번 「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은 '24.11월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공공시설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업무의 부서 이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, 기금의 관리·운용을 위한 기금관리공무원(안 제7조제1항제2호)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(안 제9조제2항)을 변경하고, 일부 조문에 대해 자구 수정(안 제3조, 제8조)을 하고자 하는 것임

현행	개정안
제3조(설치) (생략)	제3조(기금의 설치) (현행과 같음)
제7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. 다만,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(계약사무 포함)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	제7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분임기금운용관 : <u>도시계획과장</u>	2. ----- <u>도시공간전략과장</u>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8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	제8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----- <u>관리·운용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둔다. 1. ~ 3. (생략) 4. 그 밖에 기금의 <u>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하여</u>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 ② 위원장은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<u>도시계획과장</u>으로 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1. ~ 3. (생략) ③·④ (생략)	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<u>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</u> ----- ----- 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도시공간전략과장</u>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③·④ (현행과 같음)

부칙	
현행	개정안
< 신설 >	<u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 <u>제2조(위원회 운영에 관한 적용례) 2024년 11월 13일 시행된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라 제7조제1항과 제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1월 13일 이후 운영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.</u>

나. 검토 내용

(1) 기금 관리·운용 공무원의 변경(안 제7조제1항제2호)
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제2호는 '24.11월 서울시 조직 개편¹⁾에 따라 '공공시설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업무'가 기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공간전략과로 이관된 사항을 반영하여,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기금관리공무원 중 분임기금운용관을 현행 도시계획과장에서 도시공간전략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

현행	개정안
제7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. 다만,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(계약사무 포함) 및 지급명령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	제7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----- ----- -----,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분임기금운용관 : <u>도시계획과장</u>	2. ----- <u>도시공간전략과장</u>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- 「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」²⁾에 따르면,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해 기금의

1)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, 「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」 일부개정 계획, 2025.1.16.

□ 추진배경

○ 조직개편('24.11.13.)에 따른 기금 설치·운용 부서 정비 필요

- 공공기여 기금 운용 업무 이관 (도시계획과 → 도시공간전략과)

2) 행정안전부,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, 2023.7., p.342.

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분임 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으며 시·도의 분임기금운용관은 담당 과장으로 할 수 있으므로, ‘공공시설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업무’를 담당하는 도시공간전략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함

(2)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변경(안 제9조제2항)
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2항은 서울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

현행	개정안
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 ② 위원장은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계획과장으로 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1. ~ 3. (생략) ③·④ (생략)	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도시공간전략과장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③·④ (현행과 같음)

○ 회계관직의 지정(지방기금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)

-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해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,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음
-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별도관리 하여야 함

구분	시·도	시·군·구
기금총괄관리관	예산업무 담당실(국)장	예산업무 담당 실(과)장
기금운용관	기금별 담당 실(국)장	기금별 담당 실(과)장
분임기금운용관	기금별 담당 실(과)장	-
기금출납원	기금별 담당 실(과) 업무담당(또는 주무담당)	기금별 담당 실(과) 업무담당(또는 주무담당)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(이하, “지방기금법”)」 제13조³⁾에 따르면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고, 해당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2항은 「지방기금법」 및 서울시 조직개편 사항⁴⁾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

(3) 자구수정(안 제3조, 안 제8조)
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는 조항의 제목을 ‘설치’에서 ‘기금의 설치’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, 설치하는 대상인 ‘기금’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표현하여 달리 해석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⁵⁾가 있다고 하겠음

3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4) 서울특별시, 도시공간본부 조직개편(24.7.1.字), 2024.7.15. (도시공간전략과-5588)

5) 법제처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-열번째판-, 2021년 12.월, p.6

제1장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소개

제3절 알법의 기본 원칙

- 명확하고, 논리에 어긋나지 않으며, 나타내려는 뜻이 한눈에 들어오는 표현으로 정비한다.
 - 법령문은 용어와 표현 등이 명확해야 하며, 논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. 법령문을 적용하는 국가기관이나 법령의 적용을 받는 국민이 법령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.
 - 법령은 국민생활의 많은 부분을 규제하고 영향을 미치므로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조금이라도 달리 해석될 여지
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는 해당 조항의 내용 중 ‘운용·관리’를 ‘관리·운용’으로 변경하고, 같은 조 제4호의 내용 중 ‘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하여’를 ‘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’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 이는 현행 조례 제7조(기금의 관리·운용)⁶⁾의 조제목에 맞춰 용어를 통일하여 조문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. 다만, 현행 조례 제6조제3호⁷⁾의 내용 중 기금의 ‘운용·관리’를 ‘관리·운용’으로 병행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

현행	개정안
제3조(설치) (생략)	제3조(기금의 설치) (현행과 같음)
제8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기금의 <u>운용·관리</u>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8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----- 관리·운용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그 밖에 기금의 <u>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하여</u>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4. -----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----- -----

가 없게 한다.

- 이해를 어렵게 하는 불분명한 수식관계, 복잡한 회계관계가 서술된 문장은 계산식과 도표를 활용하거나 각 호로 구분하는 등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.

- 6) 「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」 제7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. 다만,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(계약사무 포함)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
- 7) 「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」 제6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.
3. 기금의 운용·관리를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

(4)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적용례 (안 부칙 제2조)
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사항에 대해 위원회 운영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 제21조제5항제16호의 개정⁸⁾에 따라 ‘공공기여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’ 관련 업무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공간전략과로 이관된 시점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 적용 시점을 2024년 11월 13일 이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것은 부서 간 업무분장 및 수행을 위한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함

부 칙	
현 행	개 정 안
< 신 설 >	<u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 <u>제2조(위원회 운영에 관한 적용례) 2024년 11월 13일 시행된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라 제7조제1항과 제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1월 13일 이후 운영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.</u>

8)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 제21조(도시공간본부) [시행 2024. 11. 13.] [서울특별시규칙 제4671호, 2024. 11. 13., 일부개정]

⑤ 도시공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6. 공공기여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

다. 종합 의견

- 이번 「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관리공무원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임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제2호는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분임기금운용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, 관련 기준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한다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됨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는 서울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운용·관리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, 「지방기금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보임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및 제8조는 자구 수정에 관한 부분으로,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며 문장을 재정비하고자 한다는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보임. 다만, 조문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현행 조례 제6조제3호의 내용 중 ‘운용·관리’를 ‘관리·운용’으로 병행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사항에 대해 위원회 운영 적용 시점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조례의 구체적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여 부서 간 업무의 분장 및 수행을 위한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함